

재입학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제28조(학생의 정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2010.9.1, 2013.3.2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妊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2016.12.2.>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아주대학교 학칙

제25조(재입학) ① 대학원과정의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학과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2.7)

②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31)

1. <삭제 2013.12.31>

2. <삭제 2013.12.31>

③ <삭제 2013.12.31>

④ 재입학 절차,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12.31)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62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24)

② 학사경고로 1회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24)

③ 학사경고로 2회 이상 제적된 자는 재입학신청 이전에 신청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본 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생으로 수강하여 평점 2.0 이상을 취득한 후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에 소속된 자는 학과에서 정하는 별도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3.12.24.) (개정 2014.10.10)

④ <삭제 2013.12.24>

⑤ 재입학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 처리를 하지 않아 제적된 자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9.3.)

⑥ 재입학 심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행한다.(신설 2013.12.24)

1. 재입학 신청 횟수가 1회인 자에 대한 심사는 신청학과의 심사를 거쳐 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2. 재입학 신청 횟수가 2회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는 신청학과의 심사를 거쳐 학장이 추천하고 별도의 재입학사정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⑦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학생지도상 필요한 경우 등록횟수와 기 취득 학점 수에 의한 학년조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13.12.24.)

⑧ 법과대학 폐지에 따라, 기존 법과대학 소속 학생은 재입학 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로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5)

제63조(재입학자의 학사관리) ① 재입학자가 이전에 이수한 취득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② 재입학자의 학사경고 제적은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의 학사경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재입학자가 전과자격을 갖춘 경우 전과를 허용한다.

④ 재입학자의 교육과정 적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3)

※ 참고자료 : 재입학 규칙 (교육인적자원부)

행복한 학교, 학습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입학처장)
(경유)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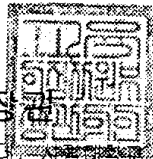
약학대학의 수업연한 확대(4년→6년), 재입학 여석 산정 기준 변경,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정원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2006.1.13, 대통령령 제19278호)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 방송·통신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근거 마련(영 제13조제1호의2 신설)
- ◇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영 제25조제2항 신설)
- ◇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정원의 감축 등(영 제29조제2항)
- ◇ 약학대학에의 편입학 등에 대한 허가(영 제29조제4항 신설)
- ◇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 허가(영 제29조의2 신설) 등

- 붙임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제16171호, 2006.1.13) 1부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 설명자료 1부, 끝.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립대학교, 국립대학교2, 국립산업대, 국립교육대, 사립산업대, 사립산업대2, 수신자 대학원대학교, 공립대학교, 기술대학, 공립대학교2, 국립전문대학1, 국립전문대학2, 공립전문대학1, 공립전문대학2, 각종학교, 각실과

★교육행정주사 최성부 교육행정사무관 김대성 대학정책과장 01/18 박춘란

협조자

시행 대학정책과-274 (2006.01.18.) 접수 아주대학교-@N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e.go.kr>

전화 02)2100-6494 /전송 02)2100-6504 / choisb@moe.go.kr / 공개

제29조제4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재입학)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

의 내외로 구분한다.

제30조제3항제2호중 “부모”를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로 한다.

제64조 전단중 “제28조제2항”을 “제19조·제28조제2항”으로, “학생의 모집단위”를 “학생의 전공이수, 모집단위”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 중 의과대학의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별도정원인정 제외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 후단 중 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의 약학대학 재적생의 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원이 설치됨에 따라 입학정원에 대한 배정이 중지되는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 또는 치의학과에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은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확대하여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하는 한편,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학사운영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대학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 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근거 마련(영 제13조제1호의2 신설)

- (1)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방송·통신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이 국제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방송·통신 대학의 경우에도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행복한 학교, 학습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포 관련 재입학 설명자료 송부

1. 우리부는 모집단위별 선발에 따른 재입학 기회의 제한 문제를 개선하고, 고등교육기회를 보다 폭넓게 부여하기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가능토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05.1.13. 공포)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재입학 여석산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재입학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1부. 끝.

신			기	
일	원	2006.2.13.	시	
수	시	시	부	
리	번호	443	처	장
과			장	
당				
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신자 공립대학교, 국립대학교, 국립산업대, 사립대학교, 사립산업대, 각종학교, 기술대학

★교육행정주서보 정봉출 교육행정사무관 박승렬 대학학무과장 박응수 대학지원국장 02/10 김화진

협조자 대학정책과장 박춘란

시행 대학학무과-923 (2006.02.10.) 접수 아주대학교-@N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e.go.kr

전화 02)2100-6515 /전송 02)2100-6524 / jpc76@moe.go.kr / 공개

□ 내용

-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로 1~4학년 학생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여석산정은 직전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의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 (4.1, 10.1자)에 명시된 제적자를 기준으로 산정
- ☞ 고등교육법시행령 : 대학의 장은 학생정원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을 허가('98.2.24자 제정)

◆ 개정

□ 산정원칙

-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1~4학년 학생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여석산정은 직전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의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 (4.1, 10.1자)에 명시된 제적자를 기준으로 산정(다만, 기존과 달리 여석산정시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음)
- 예시) A학과의 3학년 제적자(직전학기) 1명 여석 발생시 B학과 1학년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가능
- 2006학년도부터 편입학 여석산정시 교원확보를 적용으로 인하여 당초 제적생수보다 총원하지 못하는 인원(1,2학년)은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가능

예) 1,2학년 총제적자수가 30명이고(A학과 10명, B학과 8명, C학과 5명, D학과 7명), 교수확보율이 68%인 경우, 편입학 여석은 23명임($30 \times \text{산정비율 } 75\% = 22.5$ 명)

☞ 1,2학년 총제적자수 대비 충원하지 못한 7명은 재입학으로 충원 가능

- 정원외의 경우는 총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정원의 제적생이 발생시 그 인원만큼 재입학이 가능(다만, 기존과 달리 A학과의 정원외 제적생 여석을 B학과의 정원외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가능)

예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A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제적 처리되어 재입학 여석이 발생한 경우, 이를 B학과의 농어촌 특별전형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가능

※ 농어촌 특별전형 여석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실업계 특별전형 여석 등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 신·구 변경사항 요약

구분	종전	개선
모집단위	특정 모집단위 여석이 있을때 가능	전체에 여석이 있을때 이를 당해 모집단위 여석으로 사용 가능
학년구분	당해학년 여석은 당해학년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타학년 여석을 당해학년 여석으로 사용 가능
여석산정기준	동 일	

< 주의사항 >

- ※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정원내, 정원외)의 경우는 <기존>의 산정원칙과 같이 모집단위별 제적자수(입학정원의 범위내)에 따라 산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단서)
- ※ 제29조의2 제2항에 의거 학생을 재입학 허가하더라도 A학과에 재학중 제적된 학생을 B학과로 재입학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제29조의2 제2항 단서에 의거,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는 예외)
- ※ 제29조의2 제3항에 의거 재입학 여석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 내·외로 구분하여 운영

행복한 학교, 통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수신처 :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정원의 재입학 여석산정 기준 조정 통보

1. 관련 : 대학학무과-923(2006.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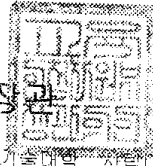
안 위 대호에 의거 각 대학에 통보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른 재입학 여석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정원의 재입학 여석산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 내용

구분	기 통보	조정
정원의 재입학 여석산정 기준	동여촌 특별전형 여석을 제외국민 특별전형, 실업계 특별전형 여석 등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정원의 재입학 여석 발생시 선발 유형에 관계없이 그 인위만큼 재입학이 가능

나. 사유 : 대학 제적자의 재입학 기회 확대. 끝.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신처 : 서울대학교, 공립대학교, 국립대학교, 국립산업대, 기술대학, 사립대학교, 사립간호대

*교육행정지원과 : 송문준 / 교육행정지원과 : 박승원 / 대학학무과 : 이기봉 / 대학지원과 : 권영 05.19 김화진

발주처

시행 : 교육인적자원부-3465 (2006.05.19.) 접수 : 아주대학교-0N ()

국 110-70, 서울특별시 중문구 세종로 110-70 정보중앙청사 / http://www.moe.go.kr

전화 02)2100-6515 / 전송 02)2100-6524 / bc76@moe.go.kr / 공개